



이민 단속에서 지방 당국의 참여 및 모범 규정에 관한 지침

2017년 1월 19일에 최초 발행된 지침의 업데이트

파트 I: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 이민 단속에서 지방 당국의 참여를 규율하는 법적 환경을 설명하는 것, (2) 이민 단속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지방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범 문안을 뉴욕주 지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¹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이 지침에 규정된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이 법 집행기관과 이민자 공동체 간의 신뢰 관계를 조성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공공 안전을 증진하며, 주 및 지방의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의 파트 II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² 또한 무허가 체류자는 다른 모든 뉴욕 주민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및 미국 헌법, 그리고 연방, 주, 지방의 법령, 규정, 정책에 의해 특정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지방 법 집행기관(LEA)은³ 개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지 여부나 이민 단속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뉴욕주 및 미국 헌법과 연방, 주, 지방 법률의 요구 사항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LEA는 일반적으로 사법 영장 없이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의 요청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할 수 없습니다.⁴ 그러나 아래 파트 III 원칙 2에서 설명할 제한적인 상황에서 LEA는 구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개인의 석방 날짜를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의 파트 III에서는 연방의 민사 이민 단속 지원 요청에 지방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및 정책 제정에 사용할 수 있는 모범 문안을 제시합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내 다른 지방 정부를 포함한 여러 주 및 수백 개의 지방 정부는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의 연방 이민 단속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과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1.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한 관할 지역을 때때로 “피난처(sanctuary)” 관할 구역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피난처”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통일된 법적 정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2. *Arizona v. United States*, 567 U.S. 387, 407 (2012) 참조. (인용 생략)

3. “LEA”에는 지방 경찰, 보안관 부서 인력, 지방 교정 및 보호관찰 인력, 학교 안전 요원 또는 자원 담당관, 학교 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4. *People ex rel. Wells v. DeMarco*, 168 A.D.3d 31 (2d Dep’t 2018).

파트 II: 이민 단속에 대한 지방 정부의 참여를 규율하는 법률

A.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0조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0조는⁵ 연방 정부가 주 및 지방 정부에 특정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권한을 제한하는데, 여기에는 연방 이민법 집행 및 조사 분야도 포함됩니다. 연방 정부는 “주가 연방 규제 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⁶ 주 정부 직원들이 연방이 제정한 규제 제도의 집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⁷ 중요한 점으로, 이러한 수정헌법 제10조상의 보호는 주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및 그 직원들에게도 확장됩니다.⁸ 연방 제도와 자발적 협력은 수정헌법 제10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⁹ 그와 같은 협력이 다른 연방, 주, 지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B. 뉴욕주 헌법 및 자치권

뉴욕주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 하에¹⁰ 지방자치법(Municipal Home Rule Law)의 시행에 따라,¹¹ 지방 정부는 “정부, 보호, 질서, 행위, 안전, 건강 및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지방 법률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 조항은 주 헌법이나 일반 주 법률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¹²

파트 III에서 제시하는 지방 정부를 위한 모범 규정은 주 헌법과 현행 주 법률 모두에 부합합니다.

C. 연방 이민 구금 요청의 처리에 관한 법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민사 이민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은, 민사적 이민 단속 활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지방 법집행기관(LEA)에 민사적 이민 “구금 요청(detainer)”¹³을 발부합니다. 구금 요청은 연방 이민 당국이 다른 기관에 발부하는 것으로, 수령 기관이 개인의 예정된 석방일시 이후 최대 48시간 동안 그 개인을 추가로 구금하고, 석방 전에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금을 요청하는 것은 연방 이민 당국이 그 개인을 인도받아 민사적 이민 단속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신병을 인계받기 위함입니다.

5.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의해 미국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州)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된다”고 규정합니다. U.S. Const., Am. X.

6. *New York v. United States*, 505 U.S. 144, 188 (1992). *New York v. United States*에서 무효화된 강제 행위는 주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떠맡도록 요구한 연방법이었습니다. 동일 자료 152-54 참조.

7. *Printz v. United States*, 521 U.S. 898, 935 (1997). *Printz*에서 무효화된 강제 행위는 주 및 지방 법집행관들이 총기 구매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Brady 총기폭력방지법의 요건이었습니다. 동일 자료 903-04 참조.

8. 동일 자료 904-05 참조 (카운티 수준의 법집행관들의 수정헌법 제10조 청구 제기를 허용함); 또한 *Lomont v. O’Neill*, 285 F.3d 9, 13 (D.C. Cir. 2002) 참조 (동일); *City of New York v. United States*, 179 F.3d 29, 34 (2d Cir. 1999) (시(市)가 수정헌법 제10조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cert. denied*, 528 U.S. 1115 (2000).

9. *Lomont*, 285 F.3d at 14 참조.

10. N.Y. Const., Art. IX, § 2(c)(ii)(10).

11. Municipal Home Rule Law(지방자치법) § 10(1)(ii)(a)(12).

12. 예를 들어, Eric M. Berman, *P.C. v. City of New York*, 25 N.Y.3d 684, 690 (2015) 참조.

13. 이러한 구금 요청은 8 C.F.R. § 287.7에 따라 발부됩니다. DHS, 양식 I-247D, Immigration Detainer—Request for Voluntary Action(이민 구금 요청—자발적 조치 요청) (5/15),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I-247D.PDF> 참조.

구금 요청(detainer)은 단순한 요청이므로, 지방 법집행기관이 이를 근거로 개인을 구금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금 요청에는 종종 ICE가 발부한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이 동반됩니다.¹⁴ 행정영장은 연방 이민 당국이 작성 및 발부하는 문서로, 특정 외국인을 추방 또는 추방 절차를 위해 체포하도록 연방 당국자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영장(judicial warrant)이 아닙니다. 사법영장이란 제3조(Article III) 연방 판사 또는 연방 치안판사가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에 기초하여 발부하는 영장으로, 연방 이민 당국이 영장 대상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¹⁵ 민사적 이민영장, 행정영장, 또는 연방 이민 당국 직원만 서명한 기타 문서는 사법영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헌법 제4차 수정조항 및 뉴욕주 헌법¹⁶에 따라, 주 또는 지방 당국이 개인을 주법상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구금해 그를 연방 이민 당국에 인도하는 경우에 체포 및 강제수용이 발생합니다.¹⁷ 주법은 주 및 지방 법집행관이 단지 민사적 이민 위반만을 이유로 개인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연방 이민 당국이 구금 요청이나 행정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¹⁸ 행정적 체포영장이나 구금 요청은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아니고, 개인이 범죄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만을 근거로 주 또는 지방 법집행기관이 체포 및 구금을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¹⁹ 행정적 체포영장이나 구금 요청에 연방 이민 당국의 서명이 있고, “상당한 근거”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²⁰ LEA가 개인을 추가로 구금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연방 이민 당국이 양식에 기재한 문구가 아니라 모든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연방 및 주 헌법에 따라, 뉴욕 주법은 법집행관에게 특정 개인이 범죄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 및 구금을 허용합니다.²¹ 제3조 또는 연방 치안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은 필요한 상당한 근거를 입증하고 체포 및 구금을 정당화합니다.²² 그러나 사법영장이 없는 경우, 추가 구금은 개인이 범죄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를 별도로 입증했을 때, 또는 상당한 근거 요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²³

14. 양식 I-200, Warrant for Arrest of Alien(외국인 체포 영장),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7/I-200_SAMPLE.PDF, 또는 양식 I-205, Warrant of Removal/Deportation(추방 영장),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7/I-205_SAMPLE.PDF 참조. 예시는 부록 A에 있습니다.

15. 경우에 따라 연방 지방법원 서기가 사법영장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Fed. R. Crim. P. 9(b).

16. 뉴욕주 헌법은 제4차 수정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Article I), § 12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해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하며, 영장은 상당한 개연성에 근거하여 선서 또는 진술로 뒷받침되고,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인물 또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부되지 아니한다.”

17. Wells, 168 A.D.3d at 39-40. 체포 또는 강제수용은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이 경찰 앞에서 떠날 자유가 없다고 믿었을” 때 발생합니다. Florida v. Royer, 460 U.S. 491, 502 (1983); 또한 People v. Yuki, N.Y.2d 585, 589 (1969) 참조. 이러한 구금은 구치소 내외부에서, 장기 또는 단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위와 같음.

19. 동일 자료 45-46 참조. 사법 영장이 없는 경우, 경찰관은 특정인이 범법행위(offense, 해당 범법을 경찰관 앞에서 저지른 경우) 또는 범죄(crime, 해당 범죄를 경찰관 앞에서 저질렀는지 여부와 무관)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습니다. N.Y. Crim. Pro. Law § 140.10(1).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와 연방 판례법에서 쓰이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는 동등한 기준입니다. People v. Valentine, 17 N.Y.2d 128, 132 (1966) 참조. “상당한 근거”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 그럴듯한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범죄(crime)”는 경범죄(misdemeanor) 또는 중범죄(felony)를 뜻하는 반면, “범법행위(offense)”는 “[뉴욕]주 법률 또는 이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지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형법 § 10.00(1), (6).

20. 예를 들어, “추방 영장”(Form I-205)은 이민 당국이 발부하는 것이며, 해당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중립적 진상조사원이 발부한 것이 아닙니다. 8 C.F.R. § 241.2 참조. 그에 더하여, DHS Form I-247D (“Immigration Detainer—Request for Voluntary Action”) (5/15),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I-247D.PDF>,에는 ICE가 “해당 대상자가 추방 대상 외국인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함”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참조. 따라서 ICE가 I-247D 상의 “상당한 근거” 선택란에 표시한다고 해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1. Wells, 168 A.D.3d at 42-43; 또한 Dunaway v. New York, 442 U.S. 200, 213 (1979) 참조. (“제4차 수정조항상 강제수용은 상당한 근거에 기초할 때만 ‘정당하다’는 일반 규칙을 명시함”)

22. Wells, 168 A.D.3d at 42-43.

23. 예를 들어, Gerstein v. Pugh, 420 U.S. 103, 111-12 (1975) 참조.

이민과 관련된 무단 구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보안관이 ICE에서 발부한 행정 구금 명령만을 근거로, “형 집행 종료(time-served)” 판결을 받은 개인을 이후 다시 체포하여 재수감시키는 경우
- 형사 형기를 마쳤거나 보석금을 낸 수감자의 석방을 이민 당국이 시설에 도착하여 민사상 이민 구금 효력을 발생시킬 때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ICE 직원이 도착하여 탑승자를 민사상 이민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하고 및/또는 체포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억류하는 경우

보석 처리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등의 과도한 행정적 지연도 불법적 억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구치소에서 구금자에 대한 현금 보석금을 직접 받거나 적절한 납부 증명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구금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²⁴ 이민 당국의 도착 시각에 맞추어 석방을 늦추기 위해 또는 구금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을 이유로 하여 보석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불법적 구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방 법원(뉴욕주 내 연방 지방법원 포함)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LEA가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에 응하여 개인을 정상적인 석방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한 경우, 해당 개인의 제4차 수정조항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²⁵ 실제로 연방 법원은 LEA가 민사상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개인을 억류한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²⁶ 이러한 연방 법원은 뉴욕주에서와 같이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이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구금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취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의 대상이며, 뉴욕주 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²⁷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을 이행할 수 있는 LEA 권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당국이 사법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LEA가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LEA의 ICE 구금 요청 준수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이러한 준수 여부는 LEA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²⁸ 본 지침은 연방 이민 당국이 사법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LEA가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이나 추가 구금 요청을 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LEA는 파트 III, 원칙 2에서 설명된 제한적 상황에서는, 추가 구금 없이 개인의 석방 일자를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의 어느 부분도 LEA가 기존 주법에 따라 주 또는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이유로 개인을 구금하거나, LEA의 기존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연방 형사 사법 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존중하며 LEA를 잠재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운데 공공 안전을 증진시킵니다.

24. N.Y. Crim. Pro. Law § 520.15; 또한 *Arteaga v. Conner*, 88 N.Y. 403, 408 (1882) 참조.

25. 예를 들어, *Santos v. Frederick Cnty. Bd. of Comm'rs*, 725 F.3d 451, 464-65 (4th Cir. 2013) 참조; *Orellana-Castaneda v. County of Suffolk*, No. 2:17-cv-04267, Dkt. No. 166 (E.D.N.Y. Jan. 2, 2025); *Miranda-Olivares v. Clackamas Cnty.*, 12-CV-02317, 2014 U.S. Dist. LEXIS 50340, at *32-33 (D. Or. April 11, 2014); 또한 *Gerstein*, 420 U.S. at 111-12 참조. (제4차 수정조항의 상당한 근거 요건의 기초에 대한 논의)

26. 예를 들어, *Santos*, 725 F.3d at 464-66, 470 참조. (연방 이민법의 민사 위반 혐의로만 체포자를 구금하여 체포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특히 보상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 1983년 소송에서 지방 자치 단체는 적격 면책 자격이 없다고 판시함)

27. 예를 들어, *Orellana-Castaneda v. County of Suffolk*, No. 2:17-cv-04267 (E.D.N.Y.) 참조. (LEA가 ICE 구금 요청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원고의 제4차 수정조항 권리를 침해했다는 청구에 대해 원고 측 집단에 유리한 약식 판결이 승인됨; 구체 조치 결정 대기 중); *Onadia v. City of New York*, No. 300940/2010e (Bronx Sup. Ct.) (2012년 12월 21일 이전 연방 이민 당국 요청을 근거로 Rikers 섬에서 예정 석방 시점을 초과한 억류에 대한 집단소송이 최근 합의에 이룸)

28. 뉴욕 법무장관 Eric T. Schneiderman 뉴욕주 경찰서장 및 보안관에게 보낸 서한 참조. (2014년 12월 2일), https://ur.ag.ny.gov/sites/default/files/letters/AG_Letter_And_Memo_Secure_Communities_12_2.pdf

추가로,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²⁹ 섹션 287(g)는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 및 지방 법집행관이 주 법률과 지방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연방 이민 당국 직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³⁰ 그러나 섹션 287(g)는 주나 지방정부가 그러한 협약 및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훈련 등의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³¹ 또한 뉴욕 법상, 섹션 287(g) 협약이 없다면 불법이 되는 이러한 체포와 구금이, 해당 협약에 따라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의 체포 및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³² 섹션 287(g) 협약이 있더라도 LEA의 이러한 체포와 구금은 뉴욕주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지침에서는 LEA가 그러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사법영장에 따라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사 체포를 시행하기 위한 LEA와 연방 이민 당국 간의 다른 협약이나 합의도 뉴욕주 법을 위반할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섹션 287(g) 및 기타 지방 법집행기관과 이민 당국 간의 민사 체포 수행 협약은 LEA와 이민자 간 협력과 신뢰를 해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신고와 협조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키고, 필수적인 지방 법집행 기능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주 법원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에 따라 LEA는 주, 시, 지방 법원의 내부에서, 각 법원으로 이동 중에, 또는 출입 시에 사법영장이나 명령 없이 민사 체포를 수행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³³

D.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에 관한 법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은 구금 요청 외에도 LEA가 구금 중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E는 개인이 석방될 때 해당 개인을 인수하기 위해 석방 날짜, 시간, 위치를 통지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사법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 LEA가 개인의 석방 정보나 주거지 주소 등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후술할 파트 III, 원칙 3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접근 방식은 LEA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공공 안전을 증진합니다.³⁴

29. 이 조항은 8 U.S.C. § 1357(g)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 *Wells*, 168 A.D.3d 31 at 49.

31. 동일.

32. 동일.

33. *Civ. Rights Law § 28*. 주 차원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70은 법집행관을 포함한 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명령은 주 법집행관이 단지 민사적 차원의 이민 위반 혐의가 의심되거나 수배된 개인을 식별 및 체포할 목적으로 자원, 장비,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한 집행관은 단지 그 사람이 무허가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원 확인, 질문, 구금 또는 연방 이민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행정명령 170.1은 연방 이민 당국의 민사적 체포는 해당 시설 내 절차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영장 또는 구금에 관한 명령이 수반될 때만 주 시설 내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4. 주 행정명령 170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법집행관을 포함한 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방 이민 당국에 연방 민사적 이민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주 법집행관은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나 관련이 없는 한 이민 신분을 조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 201(12)(b)는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기록이나 정보를 받거나 이에 접근하는 모든 기관이 그러한 기록이나 정보를 민사적 이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이민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그러한 공개가 시, 주, 및 연방 기관 간의 협력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해당 합의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공개가 그러한 합의에 따라 요청되는 특정 기록이나 정보에 국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8 U.S.C. § 1373

연방법은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법집행관이 [연방 이민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³⁵ 오히려 연방법은 주 및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과 특정 유형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합니다. 특히, 8 U.S.C. § 1373은 주 및 지방정부가 직원이나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³⁶ 또한, 연방법은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과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금지합니다.³⁷ 해당 법률의 문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은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섹션 1373은 정보 공유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법은 단순히 직원이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섹션 1373의 어떤 조항도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과 개인의 석방, 법정 출석 또는 주소에 관한 비공개 정보 등의 공유 거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섹션 1373은 지방정부가 개인의 이민 신분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및 직원이 개인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문의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³⁸

수정헌법 제10조는 섹션 1373의 적용 범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0조의 주에 대한 권한 유보는 연방정부가 “주에 연방 규제 프로그램을 제정 또는 집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연방 규제 계획의 집행에 주 정부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징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³⁹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수정헌법 제10조상의 보호는 지방정부와 그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섹션 1373에 대한 외관상의 수정헌법 제10조 위헌 주장을 기각했으면서도, 정보 공유가 주 및 지방정부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에서 자발적 정보 공유를 금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⁴⁰ 제2순회 항소법원은 “광범위한 주 및 지방정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의 확보는 기밀 유지에 대한 기대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며, “기밀 유지를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원의 이러한 정보 사용을 규제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⁴¹ 이에 따라 수정헌법 제10조는 주 또는 지방정부가 섹션 1373이 “공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제하거나 주 및 지방정부 직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제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불법적 간섭”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즉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이 저해될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⁴²

35. H.R. Rep. No. 104-725, Subtitle B, § 6, at 383 (1996).

36. 8 U.S.C. § 1373(a)-(b) (강조 추가).

37. 동일 자료 § 1373(b) (강조 추가).

38. 예를 들어 뉴욕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법집행관을 제외한) 공무원 및 직원은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문의할 수 없으나, 다음 상황은 예외로 합니다. (1)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이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혜택 자격 결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또는 (2)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문의하도록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N.Y.C. Exec. Order No. 41, § 3(a) (2003).

39. *New York*, 505 U.S. at 188; *Printz*, 521 U.S. at 916.

40. *City of New York*, 179 F.3d at 35-37.

41. 동일.

42. 동일 자료 36, 37.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이러한 정보 수집에 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해당 정보가 다양한 정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연방 당국을 포함한 제3자에게 이민 신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직원이 특정 상황(예: 무허가 체류와 관련 없는 불법 활동 의심 또는 잠재적 테러 활동의 조사)이나 “법률에 따라 그러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신분” 관련 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⁴³

(2)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Law)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또한 뉴욕주의 정보공개법(FOIL)에 의해 규율됩니다. FOIL은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 기관이 주 또는 연방 법령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지 않은 모든 기록을 요청 시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만,⁴⁴ FOIL은 또한 공개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해당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⁴⁵ 주거지 주소, 출생 일자와 장소, 개인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관한 비공개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이유로 공개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⁴⁶

E. 연방정부의 연방 보조금 조건부 승인 권한에 관한 법

주 및 지방정부는 과거에 8 U.S.C. § 1373을 위반했다는 주장 혹은 기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연방 자금 지원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주 및 그 지방정부에 교육과 의료부터 사회 서비스와 형사 사법까지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각 보조금은 서로 다른 법령 및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과 규정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보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특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주 및 지방정부에 자금 지원을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재량을 갖지만, 미국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에 일부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연방정부는 지출 권한을 사용하여 “주가 그 자체로 위헌이 될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으로 차별적인 주 차원의 활동에 연방 보조금을 조건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⁴⁷ 둘째, 모든 자금 지원 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연방의 이해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⁴⁸ 셋째, 조건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수혜자가 해당 지원 자금과 요건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⁴⁹ 마지막으로, 조건을 미이행하는 주가 잃게 되는 연방 지원 자금의 규모는 주가 조건을 “묵인하고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⁵⁰

43. N.Y.C. Exec. Order No. 41, Preamble, § 2 (2003).

44. Public Officers Law § 87(2).

45. *Id.* § 89(2)(b); 또한 *In re Massaro v. N.Y. State Thruway Auth.*, 111 A.D.3d 1001, 1003-04 (3d Dep't 2013) 참조. (직원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기록은 FOIL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면제 적용됨)

46. 이는 대표적인 사례의 예시이며,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47. *South Dakota v. Dole*, 483 U.S. 203, 210 (1987).

48. *Dole*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에서 음주 연령을 21세로 올리지 않은 경우 의회가 특정 고속도로 기금의 5%를 보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음주 연령의 상향 조정이 “고속도로 기금이 지출되는 주요 목적 중 하나”, 즉 “안전한 주(州)간 여행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자료 208-209 참조.

49. 예를 들어, *Pennhurst State Sch. & Hosp. v. Halderman*, 451 U.S. 1, 17 (1981) 참조.

50. 예를 들어, *Nat'l Fed. of Ind. Bus. v. Sebelius*, 132 S. Ct. 2566, 2604 (2012); *Dole*, 483 U.S. at 209 참조.

연방 자금 삭감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주 및 지방정부는 하나 이상의 법률적 또는 헌법적 근거를 들어 자금 삭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연방정부는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Byrne JAG)을 통해 지방 법집행을 지원하는 연방 자금 수혜자에게, 특정 시민권 및 석방일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고, 수감된 무허가 체류자에 대한 연방 당국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일부 법원은 이러한 조건에 대한 도전을 인용했지만,⁵¹ 제2순회 항소법원은 이러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며 해당 조건이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⁵²

파트 III: 모범 규정

이 파트에서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법적 환경에서 도출된 9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관할 지역에서 해당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 지방 법률 및/또는 정책을 제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범 문안을 제안합니다.

(I) LEA는 연방 이민법 집행을 목적으로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범 문안:

(a) [LEA]는 다음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개인을 정지시키거나, 질문하거나, 심문하거나, 조사하거나, 체포하지 않습니다.

- i. 실제 또는 의심되는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
- ii. 실제 또는 의심되는 연방 이민법의 민사상 위반
- iii. 개인 명의의 민사 이민 영장, 행정 영장, 또는 이민 구금 요청. 국가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 내용 포함.

(b) [LEA]는 개인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한, 범죄 피해자, 목격자,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접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c) [LEA]는 자체적으로든, 비공식적인 합의에 따라서든, 미국 연방 법전 타이틀 8의 섹션 1357(g)에 따라서든, 또는 기타 법률, 프로그램,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서든 연방 민사 이민 담당자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거나, 연방 민사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51. 예를 들어, *City of Chicago v. Barr*, 961 F.3d 882 (7th Cir. 2020); *City of Providence v. Barr*, 954 F.3d 23 (1st Cir. 2020); *City of Los Angeles v. Barr*, 941 F.3d 931 (9th Cir. 2019); *City of Philadelphia v. Attorney Gen.*, 916 F.3d 276 (3d Cir. 2019) 참조.

52. *New York v. U.S. Dep't of Justice*, 951 F.3d 84 (2d Cir. 2020).

(2) LEA는 사범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에 따라 개인을 구금해야 합니다. LEA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구금을 연장하지 않고 연방 이민 당국에 개인의 석방일을 통지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모범 문안:

(a) [LEA]는 사범영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연방 민사 이민 당국으로부터의 민사 이민 구금 요청이나 기타 영장 또는 요청에 따라 연방 민사 이민 단속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개인을 구금하거나, 억류하거나, 신병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b) 사범영장이 없는 경우, [LEA]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금을 연장하지 않고 재량에 따라 개인의 석방 전에 연방 이민 당국에 통지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i) 해당 개인이 8 U.S.C. § 132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전에 추방되거나 송환된 후 불법적으로 재입국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2) 해당 개인이 뉴욕주 형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특정 중범죄(예를 들어, A급 중범죄, A급 중범죄의 미수, B급 폭력 중범죄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ii) 연방 범죄 또는 타주(州) 법률상의 범죄로서, 뉴욕주 형법에 정의된 대로 앞서 언급한 중범죄의 기초중죄전과(predicate felony conviction)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해당 개인이 테러 활동을 하였거나 현재 테러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사범영장이 없는 경우, LEA는 개인의 비공개, 민감 정보를 민사 이민 당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 문안:

(a) [LEA]는 요청에 사범영장이 첨부되지 않은 한, 개인에 관한 어떠한 비공개 정보(개인의 석방, 법원 출석, 주거지 주소, 직장 주소 등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도 연방 민사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b) 본 법의 어떤 부분도 지방 기관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8 U.S.C. § 1373에 따라 지방 기관과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 간에 (i) 개인의 시민권 국가에 관한 정보 또는 (ii)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진술을 송수신하는 행위, 또는
- 개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주법상 허용되거나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범죄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또는
- 개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주법상 허용되거나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소년 체포 비행(delinquency), 또는 청소년범 판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c) [LEA]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는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한 정보를 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며, 그러한 정보를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LEA는 이민 단속 목적만을 이유로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이 구금 중인 개인에게 심문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 문안:

[LEA]는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이 연방 민사 이민법 집행만을 목적으로 구금 중인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질문 또는 심문하기 위해 기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LEA]는 사법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이 기관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여 민사 이민 단속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LEA는 연방 이민 단속 요청의 대상이 된 구금 중인 개인의 적법절차권(due process rights)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범 문안:

(a) [LEA]는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보석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의 석방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 i. 개인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
- ii. 연방 이민법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민사상 위반,
- iii. 사법 영장을 제외한 민사 이민 영장 또는 연방 이민 당국의 기타 요청.

(예를 들어, 해당 개인에 대한 통지, 신병 인계, 구금, 면담이나 심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민사 이민 구금, 이송, 통지, 면담이나 심문 요청을 접수한 경우, [LEA]는 해당 요청 사본을 그 안에 명시된 개인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LEA]가 해당 요청에 대해 응할 것인지 여부를 요청 기관에 회신하기 전에 해당 개인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c) [LEA]에서 구금 중인 개인은 실제 또는 의심되는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또는 위반 사항과 관계없이, 동일한 구금 등록, 처리, 석방, 이송 절차, 정책 및 관행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6) 지방 기관의 자원을 사용하여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민족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연방 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 문안:

[지방 기관]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민족성에 기초하여 개인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연방 프로그램의 조사 또는 집행을 수행하거나, 그 조사 또는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부서의 자금, 시설, 재산, 장비, 인력 등을 포함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지방 기관은 이민 관련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범 문안:

(a) [지방 기관] 직원은 공공 프로그램, 혜택 또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할 때 개인의 시민권, 이민 신분 또는 출신 국가에 대해 질문하거나 증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b) [지방 기관]은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을 위해 공식적인 언어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정책에 따라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 LEA는 연방 민사 이민 당국의 요청 접수 및 대응과 관련하여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집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모범 문안:

(a) [LEA]는 연방 민사 이민 당국으로부터 접수한 각 이민 구급 요청, 통보, 인도, 면담 또는 심문 요청에 대해 아래 (b)항에서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 대상자의 인종, 성별 및 연령
- 대상자가 LEA에 구급된 날짜와 시간, 해당 개인이 구급된 장소, 체포 혐의
- [LEA]가 요청을 접수한 날짜와 시간
- 요청 기관
- 요청의 성격
- 요청서에 기재된 이민 또는 범죄 이력 (있는 경우)
- 요청서에 이민 신분 또는 절차 관련 문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 사법영장이 있었는지 여부
- 요청서 사본이 해당 개인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제공되었다면 통보한 날짜와 시간
- 해당 개인이 요청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 해당 요청에 대한 [LEA]의 대응 (요청 불이행 결정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연방 당국이 해당 개인의 신병을 인계받거나 접근을 허용받은 날짜와 시간, 및
- [LEA] 구급에서 해당 개인이 석방된 날짜와 시간

(b) [LEA]는 [designate one or more public oversight entity(하나 이상의 공적 감독 기관을 지정하십시오)]에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의 (a)항에서 수집한 정보를 개인 식별 정보가 모두 제거된 집계 형태로 공개하여, [LEA]의 모든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LEA]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LEA는 정지, 질문, 심문 또는 체포 등 법 집행 사안에서 연방 이민 담당자를 통역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 문안:

[LEA]는 정지, 질문, 심문 또는 체포 등 법 집행 사안에서 연방 이민 담당자를 통역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록 A

국토안보부
이민 구금 요청 - 조치 통지서

대상자 ID:
사건 번호:

과일
번호:

수신: (기관명 및 직함 - 또는 후속 법집행기관)

발신: (국토안보부 사무소 주소)

해당 외국인에 대한 구금 기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유지할 것

외국인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성별: _____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귀 기관의 구금 하에 있는 상기 인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해당 인물이 미국에서 추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인물은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표시):
 -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음
 - 8 U.S.C. § 1325에 따른 불법 입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
 - 3건 이상의 경범죄 전과가 있음
 - 이전 추방 또는 송환 후 불법적으로 재입국함
 - 폭력, 위협 또는 폭행, 성적 학대 또는 착취,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 복용 운전, 사고 현장에서의 불법 도주,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규제 약물의 배포 또는 밀매, 기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경범죄 전과가 있거나 경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음
 - 고의로 이민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이민 담당관 또는 이민 관사가 관정함
 - 국가안보, 국경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_____
- 추방 절차를 개시하고 출두 통지서(Notice to Appear) 또는 기타 기소 문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기소 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_____(날짜)에 송달되었습니다.
- 추방 절차를 위한 체포영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_____(날짜)에 송달되었습니다.
- 해당 인물에 대한 미국 추방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치는 해당 인물의 구금 등급, 작업, 거실 배정 또는 기타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귀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DHS는 구금 요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유로 형사 혐의를 취하려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에 요청합니다.

- DHS가 대상자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원래 석방되어야 할 시점 이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상자의 구금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은 연방 규정 8 C.F.R. § 287.7에 근거합니다. 이민 구금 요청의 목적상, 귀 기관은 대상자를 48시간 초과 구금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상자 석방 예정 시점보다 가능한 한 조기에 DH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_____, 업무 시간 외 또는 긴급 시에는 _____로 연락 주십시오. 위 번호로 DHS 당국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Vermont, Burlington에 있는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02) 872-6020.
- 해당 구금 요청 사본을 대상자에게 제공하십시오.
- 석방 최소 30일 전 또는 가능한 한 조기에 본 사무소에 석방 일시를 통보 바랍니다.
- 또한 대상자의 사망, 입원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송 시 본 사무소에 통보 바랍니다.
- 본 구금 요청은 대상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본 사무소가 _____(날짜)에 발부한 이전의 구금 요청을 취소하십시오.

(이민 담당관 성명 및 직위)

(이민 담당관 서명)

현재 본 통지서의 대상자를 구금 중인 법집행기관이 작성할 사항:

아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동봉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사본을 팩스 _____로 DHS에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자체 보관하여 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상자를 48시간 초과 구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방 구속/수감 번호: _____ 최신 형사 기소/유죄 판결: _____(날짜) 예상 석방일: _____(날짜)

최종 형사 기소/유죄 판결: _____

안내: 본 구금 요청의 대상자가 본 기관의 구금 하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거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검찰 기소 또는 기타 법집행 목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ICE 법집행 지원센터 (802) 872-6020에 연락 바랍니다.

(공무원 성명 및 직위)

(공무원 서명)

구금자에 대한 통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귀하에 대해 이민 구금 요청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민 구금 요청이란 귀하가 구금에서 석방된 후 DHS에서 귀하의 신병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DHS가 법집행기관에 알리는 통지입니다. DHS는 현재 귀하를 구금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귀하가 형사 기소나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주 또는 지방 법집행 당국으로부터 석방되는 시점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구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DHS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추가 48시간 이내에 귀하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구금 관리자(현재 귀하를 구금 중인 법집행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게 주 또는 지방 구금으로부터의 석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본 구금 요청이나 DHS 활동과 관련된 민권 또는 시민적 자유 침해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ICE 합동 접수센터(ICE Joint Intake Center) 1-877-2INTAKE (877-246-8253)으로 연락 바랍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 또는 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ICE 법집행 지원센터(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무료 전화 (855) 448-690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NOTIFICACIÓN A LA PERSONA DETENIDA

El Departamento de Seguridad Nacional (DHS) de EE. UU. ha emitido una orden de detención migratoria en su contra. Mediante esta orden, se notifica a los organismos policiales que el DHS pretende arrestarlo cuando usted cumpla su reclusión actual. El DHS ha solicitado que el organismo policial local o estatal a cargo de su actual detención lo mantenga en custodia por un período no mayor a 48 horas (excluyendo sábados, domingos y días festivos) tras el cese de su reclusión penal. **Si el DHS no procede con su arresto migratorio durante este período adicional de 48 horas, excluyendo los fines de semana o días festivos, usted debe comunicarse con la autoridad estatal o local que lo tiene detenido** (el organismo policial u otra entidad a cargo de su custodia actual) para obtener mayores detalles sobre el cese de su reclusión. **Si tiene alguna queja que se relacione con esta orden de detención o con posibles infracciones a los derechos o libertades civiles en conexión con las actividades del DHS, comuníquese con el Joint Intake Center (Centro de Admisión) del ICE (Servicio de Inmigración y Control de Aduanas) llamando al 1-877-2INTAKE (877-246-8253). Si usted cree que es ciudadano de los Estados Unidos o que ha sido víctima de un delito, infórmele al DHS llamando al Centro de Apoyo a los Organismos Policiales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del ICE, teléfono (855) 448-6903 (llamada gratuita).**

Avis au détenu

Le département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 émis, à votre rencontre, un ordre d'incarcération pour des raisons d'immigration. Un ordre d'incarcération pour des raisons d'immigration est un avis du DHS informant les agences des forces de l'ordre que le DHS a l'intention de vous détenir après la date normale de votre remise en liberté. Le DHS a requis que l'agence des forces de l'ordre, qui vous détient actuellement, vous garde en détention pour une période maximum de 48 heures (excluant les samedis, dimanches et jours fériés) au-delà de la période à la fin de laquelle vous auriez été remis en liberté par les autorités policières de l'État ou locales en fonction des inculpations ou condamnations pénales à votre rencontre. **Si le DHS ne vous détient pas durant cette période supplémentaire de 48 heures, sans compter les fins de semaines et les jours fériés, vous devez contacter votre gardien** (l'agence des forces de l'ordre qui vous détient actuellement) pour vous renseigner à propos de votre libération par l'État ou l'autorité locale. **Si vous avez une plainte à formuler au sujet de cet ordre d'incarcération ou en rapport avec des violations de vos droits civils liées à des activités du DHS, veuillez contacter le centre commun d'admissions du Service de l'Immigration et des Douanes [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Joint Intake Center] au 1-877-2INTAKE (877-246-8253). Si vous croyez être un citoyen des États-Unis ou la victime d'un crime, veuillez en aviser le DHS en appelant le centre d'assistance des forces de l'ordre de l'ICE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au numéro gratuit (855) 448-6903.**

AVISO AO DETENTO

O Departamento de Segurança Nacional (DHS) emitiu uma ordem de custódia imigratória em seu nome. Este documento é um aviso enviado às agências de imposição da lei de que o DHS pretende assumir a custódia da sua pessoa, caso seja liberado. O DHS pediu que a agência de imposição da lei encarregada da sua atual detenção mantenha-o sob custódia durante, no máximo, 48 horas (excluindo-se sábados, domingos e feriados) após o período em que seria liberado pelas autoridades estaduais ou municipais de imposição da lei, de acordo com as respectivas acusações e penas criminais. **Se o DHS não assumir a sua custódia durante essas 48 horas adicionais, excluindo-se os fins de semana e feriados, você deverá entrar em contato com o seu custodiante** (a agência de imposição da lei ou qualquer outra entidade que esteja detendo-o no momento) para obter informações sobre sua liberação da custódia estadual ou municipal. **Caso você tenha alguma reclamação a fazer sobre esta ordem de custódia imigratória ou relacionada a violações dos seus direitos ou liberdades civis decorrente das atividades do DHS, entre em contato com o Centro de Entrada Conjunta da Agência de Controle de Imigração e Alfândega (ICE) pelo telefone 1-877-246-8253. Se você acreditar que é um cidadão dos EUA ou está sendo vítima de um crime, informe o DHS ligando para o Centro de Apoio à Imposição da Lei do ICE pelo telefone de ligação gratuita (855) 448-6903**

THÔNG BÁO CHO NGƯỜI BỊ GIAM GIỮ

Bộ Quốc Phòng (DHS) đã có lệnh giam giữ quý vị vì lý do di trú. Lệnh giam giữ vì lý do di trú là thông báo của DHS cho các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là DHS có ý định tạm giữ quý vị sau khi quý vị được thả. DHS đã yêu cầu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hiện đang giữ quý vị phải tiếp tục tạm giữ quý vị trong không quá 48 giờ đồng hồ (không kể thứ Bảy, Chủ nhật, và các ngày nghỉ lễ) ngoài thời gian mà lẽ ra quý vị sẽ được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của tiểu bang hoặc địa phương thả ra dựa trên các bản án và tội hình sự của quý vị. **Nếu DHS không tạm giam quý vị trong thời gian 48 giờ bổ sung đó, không tính các ngày cuối tuần hoặc ngày lễ, quý vị nên liên lạc với bên giam giữ quý vị**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hoặc tổ chức khác hiện đang giam giữ quý vị) để hỏi về việc cơ quan địa phương hoặc liên bang thả quý vị ra. **Nếu quý vị có khiếu nại về lệnh giam giữ này hoặc liên quan tới các trường hợp vi phạm dân quyền hoặc tự do công dân liên quan tới các hoạt động của DHS, vui lòng liên lạc với ICE Joint Intake Center tại số 1-877-2INTAKE (877-246-8253). Nếu quý vị tin rằng quý vị là công dân Hoa Kỳ hoặc nạn nhân tội phạm, vui lòng báo cho DHS biết bằng cách gọi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tại số điện thoại miễn phí (855) 448-6903.**

对被拘留者的通告

美国国土安全部 (DHS) 已发出对你的移民监禁令。移民监禁令是美国国土安全部用来通告执法当局，表示美国国土安全部意图在你可能从当前的拘留被释放以后继续拘留你的通知单。美国国土安全部已经向当前拘留你的执法当局要求，根据对你的刑事起诉或判罪的基础，在本当由州或地方执法当局释放你时，继续拘留你，为期不超过 48 小时 (星期六、星期天和假日除外)。如果美国国土安全部未在不计周末或假日的额外 48 小时期限内将你拘留，你应该联系你的监管单位 (现在拘留你的执法当局或其他单位)，询问关于你从州或地方执法单位被释放的事宜。如果你对于这项拘留或关于美国国土安全部的行动所涉及的违反民权或公民自由权有任何投诉，请联系美国移民及海关执法局联合接纳中心 (ICE Joint Intake Center)，电话号码是 1-877-2INTAKE (877-246-8253)。如果你相信你是美国公民或犯罪被害人，请联系美国移民及海关执法局的执法支援中心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告知美国国土安全部。该执法支援中心的免费电话号码是 (855) 448-6903。

파일 번호 _____

날짜: _____

**수신: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236 및 287 및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타이틀 8 파트 287에 따라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가진 모든 이민 공무원**

본인은 _____ 이(가) 미국으로부터 추방 대상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다음에 근거합니다.

- 대상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기소문서의 작성 및 집행
- 대상자에 대한 진행 중인 추방절차의 서류
- 추후 유예심사 후 입국 허가를 입증하지 못한
- 대상자의 신원을 생체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연방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대상자가 이민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 및/또는
- 대상자가 이민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한 진술 및/또는 그 밖의 신뢰할만한 증거로서, 대상자가 이민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한 추방 절차를 위해 상기 명시된 외국인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할 것을 명령합니다.

(승인된 이민 공무원 서명)

(승인된 이민 공무원 이름 및 직함 정자로 기입)

송달 증명서

본인은 외국인 체포 영장을 _____ 에서 _____ 에게
(장소) (외국인 이름)

_____ 에 송달하였고, 본 고지의 내용을 _____ 언어로
(송달 날짜) (언어)

대상자에게 낭독했습니다.

공무원 성명 및 서명

통역인 성명 또는 번호 (해당되는 경우)

국토안보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추방 영장

파일 번호: _____

날짜: _____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모든 이민 공무원

(외국인의 성명)

_____에서 _____에 미국에 입국한 상기 외국인은
(입국 지점) (입국 날짜)

다음의 최종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추방 대상입니다.

- 입국 거부(exclusion),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 출국(removal)
- 절차에서 이민판사가 내린 명령 지정 공무원이 내린 명령
-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명령
- 미국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치안법원 판사의 명령

그리고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다음 조항에 근거합니다.

본인은 아래 서명한 미국 공무원으로서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그 지시에 의거하여, 상기 명시된 외국인을 구금하고 법에 따라 미국 밖으로 추방할 것을 명합니다. 관련 비용은 다음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민 공무원 서명)

(이민 공무원 직함)

(날짜 및 사무소 소재지)

부록 B

이민 집행 참여와 관련된 뉴욕주 및 지방의 현행 법률과 정책 발췌:

뉴욕주

- 법원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 (뉴욕 민권법(NY Civil Rights Law) § 28):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CVR/28*2
- 행정명령 170.1 (주 기관의 문의, 공개 및 자원 사용 관련):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EO_%23_170.pdf
- 행정명령 171 (주 시설에서의 민사 체포 관련):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EO_170.1.pdf
- 차량 및 교통법 201(12) (DMV 정보 보호 관련):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VAT/201>

뉴욕시

- 행정명령 34 (시 기관의 문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https://www.nyc.gov/assets/immigrants/downloads/pdf/eo-34.pdf>
- 행정명령 41 (시 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
<https://www.nyc.gov/assets/immigrants/downloads/pdf/eo-41.pdf>
- NYC 행정법(Admin Code) § § 9-131, 9-205, 14-154 (구금 요청 처리 관련):
<https://www.nyc.gov/assets/immigrants/downloads/pdf/nyc-detainer-laws.pdf>
- NYC 행정법 § 10-178 (시 기관의 자원 사용 관련):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newyorkcity/latest/NYCAadmin/0-0-0-6787>
- NY 행정법 § 4-210 (시 재산에 대한 접근 관련):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newyorkcity/latest/NYCAadmin/0-0-0-2141>

기타 지방 법률 또는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Westchester 이민자 보호법: <https://humanrights.westchestergov.com/resources/immigrant-protection-law>
- Albany시 지역사회 치안 및 이민자 보호 관련 정책: <https://www.albanyny.gov/DocumentCenter/View/970/City-of-Albany-Policy-Regarding-Community-Policing-and-Protecting-Immigrants-PDF>
- Ithaca 시 조례 § 215-39 및 이하 조항들: <https://ecode360.com/32288270#32288270>